개선사항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주식회사 농협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1. 3. 12.

3. 제재조치 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개선사항 2건

※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개선사항

(1) 집합투자증권 위험가중치 산출절차 미흡

□ 은행은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원칙적으로 펀드내 기초자산을 은행이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여 각 기초자산에 적합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하는데도,

○ 집합투자증권 내 기초자산이 유동화 자산인 경우 적격 유동화 익스포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·관리하지 않고, 동 자산을 모두 일반기업채권으로 분류하여 기업 익스포져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

- 집합투자증권 내 기초자산에 유동화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익스포져가 적격 유동화 익스포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·관리하여 적절한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
(2) 비연결 사모수익증권 리스크인식·측정 부적정

□ 은행은 트레이딩 포지션의 정의 및 기본요건(보유목적, 매매 제한 여부 등)을 충족한 금융상품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으로 인식해야 하나,

○ '18년 IFRS9도입 당시 회계계정 변경으로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연결 사모수익증권을 시장리스크 산출대상 포지션으로 인식하고 시장리스크를 측정하였으므로

- 해당 자산의 보유목적, 매매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을 적절히 인식하도록 트레이딩 포지션 분류 요건을 정비하고, 비연결 사모수익증권은 비트레이딩 포지션으로 재분류하여 정확하게 리스크를 측정하는 등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